KOSHA GUIDE

C - 49 - 2012

- (나) 지지로우프는 클립에 표시된 굵기로서 2,340kg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다) 클립을 지지로우프에 설치할 경우 클립에 표시된 상·하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고 이탈방지장치를 확실하게 조작하여야 한다.
- (5) 수직 지지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(가) 합성섬유 지지로우프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 부착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한 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한다.
- (다) 허리에 장착한 벨트의 위치는 지지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의 위치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추락한 경우에는 지지상태에서 다른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- (마) 긴 합성섬유 지지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추락 저지시에 아래 부분의 장애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- (6) 수평 지지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(가) 수평지지로우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 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벨 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우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 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한 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.